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11
----------	-------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양부남 · 안도걸 · 민병덕
김문수 · 조계원 · 박정현
박수현 · 이강일 · 정준호
강준현 · 이광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여 가정폭력범죄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6월에는 인천 부평에서 한 남성이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조치가 종료된지 1주일만에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러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강도범죄, 스토킹범죄 및 가정폭력범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5.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다.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

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⑥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가정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가정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사

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스토킹범죄”를 “스토킹범죄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한다.

제21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의4제2항 중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가정폭력범죄”로 한다.

제21조의8 중 “제5조제6항·제8항”을 “제5조제7항·제9항”으로 한다.

제5장의3(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9(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임시조치(이하 이 장에서 “임시조치”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하 이 장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으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가정폭력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

서”라 한다)의 장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하 이 장에서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임시조치 결정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가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임시조치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보호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직장 소재지
5. 전화번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
2. 임시조치 기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임시조치 기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3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7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가정폭력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연장·변경·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10(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9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조치”는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본다.

제31조의11(가정폭력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9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가정폭력행위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가정폭력행위자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보호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 · 취소의 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연장의 청구 또는 변경 · 취소의 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정폭력행위자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때
2.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원인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3.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u>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u> 를 말한다. 2. ~ 3의4.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 ----- <u>강도범죄, 스토킹범죄</u> <u>및 가정폭력범죄</u> -----. 2. ~ 3의4. (현행과 같음) <u>3의5.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u> <u>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u> <u>나.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u>

4. (생략)

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다.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4. (현행과 같음)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 ⑤ (생략)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가정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가정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⑦ -----제6항-----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작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⑨ -----제6항----- ----- ----- ----- -----.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u>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u> 또는 <u>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작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u> 1. (생략) 2. <u>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u>: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제9조의2(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가정폭력범죄</u>----- ----- ----- -----. 1. (현행과 같음) 2. <u>스토킹범죄 또는 가정폭력범죄</u>----- -----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
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
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
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
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
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
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
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
제8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1. ~ 5. (현행과 같음)

6.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
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
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으로 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가정폭력범
죄-----

-----.

제21조의8(준용규정) -----
-----제5조제7항·
제9항-----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신 설>

<신 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contain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guidelines. Each row is composed of three lines: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providing a structured space for practicing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제5장의3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9(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임시조치(이하 이 장에서 “임시조치”라 한다) 또는 같은 법제55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하 이 장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으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가정

폭력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
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
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
장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
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하
이 장에서 “보호관찰소”라 한
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
하여야 한다.

② 임시조치 결정 또는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을 받은 가정폭
력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
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보호
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
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가정폭
력행위자가 제2항에 따라 전자
장치를 부착하면 관할경찰관서
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
야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
호·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임시조치 또
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1

호·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보호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직장 소재지

5. 전화번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

2. 임시조치 기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임시조치 기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3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7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가정폭력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연장·변경·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1조의10(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9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의 전자장치 부착의 종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7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잠정조치”는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

<신 설>

호명령”으로 본다.

제31조의11(가정폭력행위자 수신

자료의 보존·사용·폐기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
의9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전자
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가정
폭력행위자 수신자료”라 한다)
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가정폭력행위자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
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혐의에 대
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
용하는 경우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
1호·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
른 임시조치 또는 같은 법 제
5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가정폭력행
위자의 피해자보호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변경·취소의 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따른 피해자보호 명령의 연장의 청구 또는 변경·취소의 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정폭력행위자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 수신자료를

	<u>를 폐기하여야 한다.</u> <u>1.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때</u> <u>2.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원인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u> <u>3.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u>
--	--